

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4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2. 7.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- 가. 비슬산 자연휴양림 휴무일이 화요일로 지정됨에 따라 비슬산 치유의 숲과 비슬산 자연휴양림 관리주체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 팀으로 운영일과 휴무일을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비슬산 치유의 숲 휴무일을 화요일로 변경하고자 함
- 나. 비슬산 자연휴양림과 비슬산 치유의 숲을 연계한 이용객 다수

2. 주요내용

- 가. 휴관일 지정(안 제4조제1항제2호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
(1)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0조
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- 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3. 1. 5. ~ 1. 25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매주 화요일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3조 (생략)	제1조 ~ 제3조 (현행과 같음)
제4조(이용시간 및 휴관일) 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	제4조(이용시간 및 휴관일) 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휴관일	2. -----
가. 매주 <u>월요일</u>	가. 매주 <u>화요일</u>
나. ~ 다. (생략)	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□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
제22조(자연휴양림 등의 위탁)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□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조(자연휴양림등의 위탁) ① 법 제22조에서 “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로서 자연휴양림, 산림욕장, 치유의 숲,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·단체를 말한다.

1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
 - 1의2.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
 2. 「민법」에 따라 산림문화·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 4. 독립가,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·단체
-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,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